

복지규정

제정 2010. 2. 26. 규정 제50호
[시행 2014.7.24.] [규정 제187호, 2014.7.24., 일부개정]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임원과 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된다.

제2장 안전과 보건

제3조(안전 및 보건관리)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건강진단) 임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안전 및 위생교육) 임직원을 채용할 때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다.

제3장 체육

제6조(직장체육진흥) 임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체육행사 등) ① 임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취미, 오락 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 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는 재단에서 부담한다.

③ 임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장소,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4장 후생

제8조(장학금 지급) 임직원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여 및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보육비 지급) 직원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차사택대여 및 운영) ①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단소유 사택이나 임차주택(이하 “임차사택”이라 한다)을 대여할 수 있다.

② 주관부서장은 사택임차에 따른 계약 권리보전 등 제반사항을 주관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임차계약 및 권리보전 등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한다.

제11조(주택자금대여) ① 무주택직원이 주택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경우 소요자금 중 일부에 대하여 주택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합숙소 설치) 임직원의 연수훈련과 직원의 숙식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장 재해보상

제13조(재해보상) ① 재단은 임직원에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보상받도록 하고 별도로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7.24>

1. 삭제 <2014.7.24>

2. 삭제 <2014.7.24>

② 삭제 <2014.7.24>

③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4조(사회보장보험가입 등) 임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보장보험 등에 가입시킬 수 있다.

제6장 사내근로복지기금

제15조(사내근로복지기금) ①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서 정한 근로복지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육비 등을 지원할 때에는 회사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7장 선택적복지제도

제16조(선택적복지제도) 직원의 복지후생 증진 및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 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 <2010.2.26>

제2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 <규정 제187호, 2014.7.24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